

문화예술사업 지원금 운영규정

제 정	2007. 08. 10
개 정	2009. 01. 23
개 정	2010. 01. 06
개 정	2016. 03. 23
개 정	2017. 02. 07
개 정	2022. 03. 02
개 정	2023. 09. 19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지원금 교부대상·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지원금”이라 함은 단체 및 개인이 공익 또는 정책상 필요에 따라 행하는 문화예술사업 및 행사에 대하여 재정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재단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 <개정 2017.2.7.>
2. “지원사업”이라 함은 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행사를 말한다.
3. “지원사업자”이라 함은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자(또는 단체)로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자(또는 단체)를 말한다. 다만,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남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17.2.7.>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지원 대상)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.6.>

1. 법률이나 규정에 있는 경우
2. 국가나 성남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<개정 2010.1.6.>

제5조(지원신청) ① 지원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“별지 제1호 서식” 내지 “별지 제4호 서식”에 의거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7.2.7.>

1. 신청인(신청단체)의 이름 또는 내용



2.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
3.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
4. 지원사업 기간
5. 지원금 집행동의서

제6조(지원금의 교부 결정) ① 재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금 교부를 결정한다. <개정 2010.1.6.>

1. 법령과 규정의 목적에 위배 여부
2.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
3.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
4. 기타 재단의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정성 여부

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.6.>

제7조(지원금의 교부조건) ① 대표이사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지원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 <개정 2010.1.6.>

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지원금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8조(지원금의 교부결정통지) ① 대표이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내용과 조건을 지원사업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.6.>

② 지원금의 교부결정 통보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1.6.>

제9조(지원금의 교부절차) ① 지원사업자는 결정된 지원금을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지원금청구서에 의하여 1개월 전에 대표이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.6.>

② 대표이사는 제1항의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개산급으로 지원금을 전액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지원시기 및 지원금의 규모는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0.1.6.>

제10조(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변경·취소) ① 대표이사 지원금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.6.>

② 대표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교부결정 취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. <개정 2010.1.6.>



1. 지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, 제7조의 내용과 조건을 위반한 경우
2. 지원금의 교부내용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
3. 기타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

제11조(용도 외 사용금지) 지원사업자는 법령 및 규정,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(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) 지원사업자는 사업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(정산보고서 제출 의무) 지원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“별지 제5호 서식” 내지 “별지 제7호 서식”에 의거 그 지원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표이사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원 사업은 사업비 정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<개정 2010.1.6.>

제14조(지원사업 정산검사 및 평가) ① 대표이사는 제13조의 실적보고와 사업비 정산서를 지원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한다. 다만, 정산검사에 따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10.1.6.>

② 대표이사는 지원사업 기간 중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·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10.1.6.>

③ 지원사업의 교부 목적과 기대효과를 위하여 지원사업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의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2010.1.6.>

제14조의2(집행잔액의 반납)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원사업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총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제출 시에 지원금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3.23.>

제15조(지원사업의 신고) 지원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사업을 폐지한 때
2.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
3.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

제16조(지원사업에 대한 제재) 대표이사는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


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.6.>

1.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
2. 지원사업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
3.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
4.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때
5. 이 규정에 의한 의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산, 평가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
6. 제10조의 각 항에 해당된 때

제17조(위임규정)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.< 개정 2010.1.6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

〔별지 제1호 서식〕

<개정 2009.1.23., 2010.1.6., 2016.3.23., 2022.3.2., 2023.9.19.>

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사업 지원금 (신청·청구)서			
지원사업명			
사업일시			
사업장소			
지원사업소요경비 (단위 : 천원)			
총소요액	지원금신청액	자체부담액	기타
사업수행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(일간)		
첨부서류	사업계획서 1부		
위와 같이 귀 재단 문화예술 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금을 청구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단체명 : (직인) 대표자 : (인) 주소 : 전화번호 :			
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귀하			

접	접수일자	접수번호	결	담	당	부	장	본	부	장	대	표	이	사
수	20 . . .		재											



[별지 제2호 서식]

사업계획서

☐ 사업(행사)명 :

☐ 사업계획

○ 목 적 :

○ 내 용 :

- 일시(기간) :

- 장소(행사장) :

- 참여대상(인원) :

☐ 사업주체

○ 주 최 :

○ 주 관 :

☐ 사업내용

○

○

○

☐ 추진방법

○

○

○

☐ 기 타

○ 기대효과 :

○



[별지 제3호 서식]

소요경비 산출내역

(단위 : 원)

항 목	소요금액	사 업 비 집 행 내 역			산 출 기 초
		재 단 지 원 금 (신 청 액)	자 부 담	기 타	
계					



〔별지 제4호 서식〕

<개정 2010.1.6., 2016.3.23., 2017.2.7.>

지원금 집행 동의서

문 화 예 술 사 업 명			
사 업 (행 사) 명		지원금액(원)	

사업 주체	단 체 명		직 인	(인)
	대 표 자 성 명			
		(사업기간 중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) 전임자명 : 변경일자 :		
	주 소	()		
	유선번호		홈 페이지	
	휴대번호		이 메 일	

본 단체(개인)는 위와 같이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문화예술사업 지원금운영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인지하였으며, 제출한 사업계획을 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단체(개인)는 민·형사상의 책임에 따른 그 어떠한 처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귀하



[별지 제6호 서식]

지원사업 추진실적	
사업개요	
추진실적	
효과	
문제점 및 건의사항	



<개정 2017.2.7.>

지원금 건별 지급명세서

(단위 : 원)

연번	지출항목	지 급 대 상		지급일자	지급방법	산출내역	지출금액
		상호(성명)	사업자등록번호 (생년월일)				
합 계							

※ 붙임 - 증빙 영수증 철(연번 순으로)

